

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9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납세자 등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

대리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

신청내용

① 처분청	②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(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(부과연월,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)

④ 불복의 사유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)

⑤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	신청[]	신청하지 않음[]
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불복사유서(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) 2.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(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자 (서명 또는 인)

이의신청서 접수증

(접수번호 호)

성명(법인명)	주소(영업소)
접수자	접수일자

작성방법

□ 신청내용

- ①처분청: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.
-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: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: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.
- ④불복의 사유: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.
-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: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[√] 합니다.

□ 제출기관

-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[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]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, 특별자치시세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에게, 시·군·구세[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